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개정 취지 및 신구조문

1. 개정취지

하자 다발 및 부정당업자 지정 등 품질로 인한 사회적 물의발생 인증 업체에 대한 인증관리 강화, 인증심사 활동 등의 절차보완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품질 책임성 제고 및 인증관리 강화를 위해 최초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추가(제7조)

* 제출서류 추가 : 최근 3년간 발생된 하자 및 부정당업자 지정건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 특별 사후관리심사 실시 요건 명확화 및 실시대상 추가 등(제19조)
 - 특별 사후관리심사 요건 중 사회적 품질 이슈를 **인명의 손상, 재산의 손실, 승인되지 않은 부품의 사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 **하자 다발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 된 경우** 신설하는 요건에 해당될 시 특별 사후 관리 대상으로 추가(별표 7호 신설)

구 분	배점					군납액별 특별 사후관리심사 요건
최근 3년 하자누적 건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0~50억원 미만 : 1점 이상 • 50~100억원 미만 : 2점 이상 • 100억원~200억원 미만 : 3점 이상 • 200억원~1000억원 미만 : 4점 이상 • 1000억원 이상 : 5점 이상
	2건	3~4 건	5~7 건	8~10 건	11건 이상	
부정당 업자(업체) 지정건수	1점	2점		3점		3점 이상
	1건	2건		3건이상		

- 특별 사후관리심사 의무실시 조항 추가
 - ① 사회적 품질 이슈 또는 품질경영체제의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 ② 뇌물 공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③ 하자 다발 및 부정당업자 지정 건수가 특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 특별사후관리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1건이상 발생한 경우 인증 취소 요건 추가(제25조)
 - 사회적 품질 이슈 또는 품질경영체제의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 뇌물 공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하자 다발 및 부정당업자 지정 건수가 특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 변경심사 대상 추가 및 품류가 동일한 품목이 인증범위에 추가될 경우
별도 변경심사 불필요 사항 반영(제21조)
 - * 심사대상 추가 : 인증범위내 활동(설계, 개발 및 제조 등)의 추가시
- 인증신청서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품류 구분 기준 구체화(별표 제3호)

품류구분 : 장비별 또는 기술(제조 및 기능) 특성이 유사한 그룹으로 인증분야의 최소 단위로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품류를 분류한다.

가. 제품의 특성 : 제품의 구성 및 가공절차, 제품의 성능 및 용도

나. 원자재(부품포함) 특성 다. 생산시설, 제조방법, 시험/검사장비 등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7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최초 신청하는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품원의 품보담당부서에 제출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인증서 표기사항(별지 제1-1호 서식) 3. 인증신청범위의 생산 및 납품실적(별지 제1-2호 서식)과 해당 증빙자료 4. 품질경영체제 연계표(A, B)(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5. 품질경영체제 문서(품질매뉴얼, 프로세스 및 절차서 등) 전자화일 6. 경영검토 자료 7. 내부심사 자료 8. 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 9. 기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타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서 사본 등)	제7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최초 신청하는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품원의 품보담당부서에 제출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인증서 표기사항(별지 제1-1호 서식) 3. 인증신청범위의 생산 및 납품실적(별지 제1-2호 서식)과 해당 증빙자료 4. 품질경영체제 연계표(A, B)(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5. 품질경영체제 문서(품질매뉴얼, 프로세스 및 절차서 등) 전자화일 6. 경영검토 자료 7. 내부심사 자료 <u>8. 최근 3년간 발생한 하자 및 부정당업자 지정 건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u> 9. 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 10. 기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타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서 사본 등)	인증조직의 품질책임성 제고 및 인증관리 강화차원에서 최초 인증신청시 제출서류 추가
제19조(사후관리심사) ① 사후관리심사는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심사활동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기 사후관리심사와 특별 사후관리심사로 구분한다. 1.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인증조직의 품질경영체제를 확인하기 위해	제19조(사후관리심사) ① 사후관리심사는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심사활동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기 사후관리심사와 특별 사후관리심사로 구분한다. 1.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인증조직의 품질경영체제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중에 연 1회 이상 실시하	

현 행	개 정(안)	비 고
유효기간 중에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특별 사후관리심사는 정기 사후관리심사와 별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품보담당부서 등의 요청 또는 인증업무주관부서의 결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품질경영활동 중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이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나.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전반적으로 변경되거나 생산요소의 중대한 변경(주요공정 및 생산시설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다. 인증조직의 사회적 품질 이슈 또는 품질경영체제의 중대한 문제 발생으로 품질경영체제의 여러 요소에 대한 공식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라. 품질경영 활동과 관련된 뇌물 공여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현장심사이지만 전체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심사일 필요는 없으며,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검토, 내부심사 계획 및 수행 결과 2. 이전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검토 3. 목표달성과 관련된 품질경영체제의 효과성 4.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	여야 한다. 2. 특별 사후관리심사는 정기 사후관리심사와 별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품보담당부서 등의 요청 또는 인증업무주관부서의 결정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u>각 목의 심사 사유와 관련된 품질경영체제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u> 가. 품질경영활동 중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중대한 부적합이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나. 조직의 품질경영체제가 전반적으로 변경되거나 생산요소의 중대한 변경(주요공정 및 생산시설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다. <u>인명의 손상, 재산의 손실, 승인되지 않은 부품(원자재 포함)의 사용 등과 관련된</u> 인증조직의 사회적 품질 이슈 또는 품질경영체제의 중대한 문제 발생으로 품질경영체제의 여러 요소에 대한 공식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라. 품질경영 활동과 관련된 뇌물 공여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u>마. 인증조직의 하자 및 부정당업자 지정으로 별표 제 7호의 특별 사후관리심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u> ② 정기 사후관리심사는 현장심사이지만 전체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심사일 필요는 없으며,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별사후관리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명시 특별 사후관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인증조직의 사회적 품질이슈 사항 명확화 *민간사례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하자로 인해 신체의 손상, 재산의 손실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정 취소(조달청고시 제 201803호) 인증조직의 하자 다발 및 부정당업자 지정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사후관리심사 대상 포함 추가

현 행	개 정(안)	비 고
된 활동의 진행 경과 5.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6. 불만의 처리 등 ③ 국내인증기구에 등록된 ISO 9001 인증조직에 대한 사후관리심사는 ISO 인증심사결과를 검토하여 부적합 우려가 없는 경우 ISO 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심사팀은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제17조에 따른다. ⑤ 심사팀장은 제18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업무주관부서 및 품보담당부서에 보고 및 통보한다. ⑥ 인증조직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후관리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심사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품보담당부서에 연기사유와 심사실시 일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품보담당부서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인증업무주관부서로 심사연기를 의뢰할 수 있다. ⑦ 국방품질경영상 수상조직은 수상일 이후 도래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사후관리심사에 한하여 2회까지 생략할 수 있다. ⑧ 사후관리심사 인증업무 수행절차는 별표 제4-1호를 따른다.	1. 경영검토, 내부심사 계획 및 수행 결과 2. 이전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검토 3. 목표달성과 관련된 품질경영체제의 효과성 4.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된 활동의 진행 경과 5.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6. 불만의 처리 등 ③ 국내인증기구에 등록된 ISO 9001 인증조직에 대한 사후관리심사는 ISO 인증심사결과를 검토하여 부적합 우려가 없는 경우 ISO 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심사팀은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제17조에 따른다. ⑤ 심사팀장은 제18조에 따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업무주관부서 및 품보담당부서에 보고 및 통보한다. ⑥ 인증조직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후관리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심사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품보담당부서에 연기사유와 심사실시 일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품보담당부서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인증업무주관부서로 심사연기를 의뢰할 수 있다. ⑦ 국방품질경영상 수상조직은 수	특별 사후관리심사 의무실시 조항 추가 (①사회적 품질 이슈 또는 품질

현 행	개 정(안)	비 고
	상일 이후 도래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사후관리심사에 한하여 2회까지 생략할 수 있다. ⑧ 사후관리심사 인증업무 수행절차는 별표 제4-1호를 따른다. <u>⑨ 제1항 제2호 다, 라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업무주관부서는 품질경영체제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특별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u>	경영체제의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②뇌물 공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하자 다발 및 부정당업자 지정 건수가 특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제21조(변경심사) ① 변경심사는 인증조직에서 인증유효기간 중 인증범위의 변경(인증규격 전화, 사업장 이전 또는 추가, 인증분야 추가)이 필요한 경우 그 적합성과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이다. ② 변경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인증조직은 사전에 해당 요구사항 등을 품질경영체제에 반영하여 3개월 이상의 실행기간을 갖고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활동을 통해 적합성 및 적용성을 확인한 후에 변경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분야 추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체제에 따라 실행하고 생산 및 납품한 실적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21조(변경심사)① 변경심사는 인증조직에서 인증유효기간 중 인증범위의 변경(인증규격 전화, 사업장 이전 또는 추가, 인증분야 추가, <u>인증범위내 활동의 추가</u>)이 필요한 경우 그 적합성과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이다. ② 변경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인증조직은 사전에 해당 요구사항 등을 품질경영체제에 반영하여 3개월 이상의 실행기간을 갖고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활동을 통해 적합성 및 적용성을 확인한 후에 변경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분야 추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체제에 따라 실행하고 생산 및 납품한 실적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u>별표 제3호의 소분류 기준에 의해 품류가 동일한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도래하는 정기심사시 반영할 수 있다.</u>	변경심사 대상에 인증범위내 활동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 인증범위상 소분류 기준 품류가 동일한 품목이 인증범위에 추가될 경우 별도 변경심사 불필요 사항 반영
제25조(인증효력 및 인증취소 의	제25조(인증효력 및 인증취소 의	

현 행	개 정(안)	비 고
퇴) ①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업체에 발급된 인증서는 군수품 생산 및 납품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인증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거쳐 방위사업청(획득정책과)에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인증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요구사항에서 중부적합이 2회 연속 발생하는 경우로 한다.	퇴) ①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업체에 발급된 인증서는 군수품 생산 및 납품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유효하다. ② 인증업무주관부서장은 인증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실무위원회를 거쳐 방위사업청(획득정책과)에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인증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u>다음 각호와 같다.</u> 1. <u>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요구사항에서 중부적합이 2회 연속 발생하는 경우</u> 2. <u>제 19조 ①항 2호의 다, 라 및 마 목에 의한 인증조직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심사결과 중부적합이 1건 이상 발생한 경우</u>	특별 사후관리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인증취소 사항 추가 (①사회적 품질 이슈 또는 품질 경영체제의 중대한 문제를 발생 시킨 경우 ②뇌물 공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하자 다발 및 부정당업자 지정 건수가 특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별표 제3호] 나. 소분류 : 인증신청서의 신청범위에 대한 기술적 특성임. 1) 품류 구분 : 장비별 또는 기술(제조 및 기능) 특성이 유사한 그룹으로 구분한다.	[별표 제3호] 나. 소분류 : 인증신청서의 신청범위에 대한 기술적 특성임. 1) 품류구분 : <u>장비별 또는 기술(제조 및 기능) 특성이 유사한 그룹으로 인증분야의 최소단위로서, 아래 사</u>	인증범위 관련성 여부 명확화를 위해 인증신청서의 소분류에 해당하

현행	개정(안)	비고																															
- 인증분야의 최소단위로 인증대상 품류로 구분된다.	<u>항을 고려하여 품류를 분류한다.</u> <u>가. 제품의 특성</u> - <u>제품의 구성 및 가공절차</u> - <u>제품의 성능 및 용도</u> <u>나. 원자재(부품포함) 특성</u> <u>다. 생산시설, 제조방법, 시험/검사장비 등</u>	는 품류 구분을 구체화 *통계청고시 산업분류(소분류) 기준 참조																															
<신설> [별표 제 7호] <u>특별 사후관리심사 실시 기준(하자 다발 및 부정당업자 지정)</u> 1. <u>하자 건수 및 부정당업자 지정 건수는 인증업체가 인증자격을 유지하는 최근 3년동안 누적된 건수이며, 하자 발생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동시에 받을 경우 각 배점의 합이 군납액이 0~50억원의 경우 1점 이상, 50~100억원 미만인 경우 2점 이상, 100~200억원 미만인 경우 3점 이상, 200~1,000억원 미만인 경우 4점 이상, 1,000억원 이상인 경우 5점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 사후관리심사 실시 대상으로 한다.</u> 2. <u>하자 건수는 대군기술지원팀에서 매분기 품질인증팀으로 통보되는 하자현황을 근거로 산출하며, 부정당업자 지정건수는 방위사업청에서 공고한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산출한다.</u> 3. <u>하자 다발 및 부정당업자 지정의 사유로 특별 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한 업체에 대한 하자 및 부정당업자 지정 건수는 특별 사후관리심사일 이후 발생한 건수부터 다시 산출한다.</u> 4. <u>특별 사후관리심사 실시 세부기준</u> <table><tr><th>구분</th><th colspan="5">배점</th><th>군납액별 특별 사후관리심사 요건</th></tr><tr><td rowspan="2">최근 3년 하자누적 건수</td><td>1점</td><td>2점</td><td>3점</td><td>4점</td><td>5점</td><td rowspan="2">• 0~50억원 미만 : 1점 이상 • 50~100억원 미만 : 2점 이상 • 100억원~200억원 미만 : 3점 이상 • 200억원~1000억원 미만 : 4점 이상 • 1000억원 이상 : 5점 이상</td></tr><tr><td>2건</td><td>3~4 건</td><td>5~7 건</td><td>8~10 건</td><td>11건 이상</td></tr><tr><td rowspan="2">부정당 업자(업체) 지정건수</td><td>1점</td><td colspan="2">2점</td><td colspan="2">3점</td><td rowspan="2">3점 이상</td></tr><tr><td>1건</td><td colspan="2">2건</td><td colspan="2">3건이상</td></tr></table>		구분	배점					군납액별 특별 사후관리심사 요건	최근 3년 하자누적 건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0~50억원 미만 : 1점 이상 • 50~100억원 미만 : 2점 이상 • 100억원~200억원 미만 : 3점 이상 • 200억원~1000억원 미만 : 4점 이상 • 1000억원 이상 : 5점 이상	2건	3~4 건	5~7 건	8~10 건	11건 이상	부정당 업자(업체) 지정건수	1점	2점		3점		3점 이상	1건	2건		3건이상		인증조직의 하자 다발 및 부정당업자 지정의 경우 특별 사후관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판단기준 추가
구분	배점					군납액별 특별 사후관리심사 요건																											
최근 3년 하자누적 건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0~50억원 미만 : 1점 이상 • 50~100억원 미만 : 2점 이상 • 100억원~200억원 미만 : 3점 이상 • 200억원~1000억원 미만 : 4점 이상 • 1000억원 이상 : 5점 이상																											
	2건	3~4 건	5~7 건	8~10 건	11건 이상																												
부정당 업자(업체) 지정건수	1점	2점		3점		3점 이상																											
	1건	2건		3건이상																													
<주> 1) <u>하자 발생의 기준일은 매분기 대군기술지원팀에서 통보되는 하자현황의 결과통보일로 하며, 동일 계약건의 생산물품중 동일로트에 대해 중복 발생한 하자는 1건으로 집계함</u> 2) <u>군납액은 특별 사후관리심사 검토사유 발생일 전년도 최근 3년 평균</u>																																	

현 행	개 정(안)	비 고
<u>(정부품질보증결과보고서 일자 기준)으로 함(군납실적이 없는 해당연도는 평균 산출에서 제외).</u>		